

등록번호	반부패청렴팀TF-915
등록일자	2016.08.08.
결재일자	(2016.08.08.)
공개구분	비공개(6)

대리	차장		
홍승연	대결 08/08 남 흥하		
협 조			



‘16년 제3차 청렴 옴부즈만 회의 결과 보고

2016. 8.



인천항만공사
반부패청렴팀

‘16년 제3차 청렴 옴부즈만 회의 결과 보고

I 개요

- 일 시 : 2016. 8. 4.(목) 15:00 ~ 17:00
- 장 소 : 인천항만공사 5층 중회의실
- 참석자 (5명)
 - 청렴옴부즈만 김철희 위원, 안익장 위원, 정운용 위원
 - 반부패·청렴팀 이정필 팀장, 홍승연 대리
- 주요 회의안건
 - ‘16년도 반부패 자율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차 심사 실시
 - ‘16년도 반부패 자율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의견 제시
 - ‘16년도 상반기 청렴옴부즈만 규정개정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보고

II 주요 회의안건

- ‘16년도 반부패 자율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차 심사 실시
 - 제안 아이디어 : 총 15건

연번	제안 아이디어명
1	외부강의·회의 등 행동강령 개정
2	청렴 모의고사 실시
3	1부서 1청렴시책
4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방법의 사규화를 위한 지침 제정
5	소액 수의계약 운영기준 강화
6	(연구)용역 종결 시 감독자에 대한 부패위험성 평가 의무 시행
7	청렴도 달성을 기록 전광판 운영
8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운영 활성화
9	감사원 감사 사례 e포스터 제작
10	청렴부서 인증제 운영
11	청렴배심원 제도 운영
12	계약심사 전자화를 통한 원스탑 투명 계약 추진
13	부패 사례집 발간
14	외부강의 신고여부 확인 절차 시행
15	부패행위자 처벌 수준 강화를 위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 1차 심사 결과

- 평가내용 : 제안 아이디어가 반부패 제도개선 공모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가위원 : 청렴 실천리더(감사팀)
- 평가결과 : 총 15건 중 자율 제도개선이 아닌 1건 제외, 14건 2차 평가 대상
: 기재부 지시사항으로 반부패 자율 제도개선 공모전 축지에 어긋나는 1건 제외

○ 2차 심사

- *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 : 제안자의 인적사항을 배제, 제안내용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음
-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부패연관성	제출된 내용이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20
제도화여부	규정 등에 명문화 하여 지속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30
효과성	성과(부패개선 및 예방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30
창의성	기존의 시책과 구별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20
합계		100

- 평가위원 및 평가일시

평가위원	평가일시
반부패·청렴 정책단 (6명) 감사팀장(단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팀장 재무관리팀장, 물류육성팀장, 항만개발팀장	'16. 7. 27.(수)
청렴 옴부즈만 (3명) 삼일회계법인 김철희 상무, 혜인아엔씨 안익장 전무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	'16. 8. 4.(목)

- 평가결과 발표 : 반부패·청렴 정책단 및 청렴옴부즈만 점수 합산, 최종 순위 결정

□ '16년도 반부패 자율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의견 제시

권고사항	(정운용 위원) '외부강의 · 회의 등 행동강령 개정'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조문들을 점검, 개정하여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
조치계획	- 청탁금지법 시행 전 검토하여 행동강령 (행동강령 제19조의2) 개정 계획(금년 4분기 중)

III

'16년도 상반기 청렴 옴부즈만 규정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보고

- (‘15년 4차 청렴옴부즈만회의 권고사항) 인사규정에 예비합격자 채용 및 등록시효 근거 마련하여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김영국 위원) 매년 채용 시 임용 예정자에 임용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는 채용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았는데, 인사규정에 예비합격자 채용 및 등록시효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필요
이행조치	-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경영지원팀-977, ‘16.2.24) : 예비합격자 관련 조항 신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합격자 결정) ⑥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 ('15년 4차 청렴옴부즈만회의 권고사항)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자회사 사장 경영계약서 체결 시 재취업 관련 규정 개정

<p>권고사항</p>	<p>(김영국 위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자회사 사장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규정 강화 필요</p>				
<p>이행조치</p>	<p>-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경영계약서(2016년) 체결 (기획조정실-377, '16.2.15) :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경영계약서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개정 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개정 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p>②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는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p> </td> <td style="padding: 5px;"> <p>②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는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p> </td></tr> </tbody> </table>	개정 전	개정 후	<p>②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는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p>	<p>②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는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p>
개정 전	개정 후				
<p>②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는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p>	<p>②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는 영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p>				

○ ('16년 1차 청렴옴부즈만회의 권고사항)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p>권고사항</p>	<p>(김영국 위원) ① 이사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안건은 이사회 개최 7일 전, 차년도 예산안은 15일 전에 통보해야 함. ②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의결은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운영해야 함. ③ 공사 지도·감독 지위에 있는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신설 필요.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p>
--------------------	---

	-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기획조정실-655, '16.3.17)
이행조치	개정 전
	제7조(안건부의) 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회의일자를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소집 통보(별지제2호서식)와 함께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보서에 서면 결의임을 표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실비지급) ⑤ 신설
	제14조(의사록 작성 및 관련서류 보존) ① 위 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은 의사록(별지5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진행을 녹음할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록, 의결서, 안건원안 등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부의)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통보(별지제2호서식)와 함께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차년도 예산안은 15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면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소집통보서에 기재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실비지급) ⑤ 공사 지도·감독 지위에 있는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별지5호 서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의결서, 안건원안 등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IV

향후 추진계획

- '16년도 반부패 청렴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16. 5월)
- '16년 제4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16. 10월)

V

소요비용

- 자문료 : 600천원(3인)
 - 지급대상 : 김철희, 안익장, 정운용 위원 각 200천원
 - 예산과목 : [판관]지급수수료 - 자문료 - 청렴 옴부즈만 운영
- 만찬비용 : 287천원
 - 예산과목 : [판관]행사비 - 사내행사 - 청렴 옴부즈만 운영

VI

회의사진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